

인도 해운무역법 제정, 운임인상 절차 명문화

유가할증료, 터미널 혼잡비 등 부대운임 포함

인도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운임인상 절차를 법제화한 새로운 해운무역법(Shipping Trade Practices Act)을 제정, 모든 해운선사와 대리점에 예외 없이 적용시킬 방침이다.

새로 시행될 법령에서는 모든 중개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운임 설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임은 선사와 컨퍼런스 차원의 운송료(freight-rate)를 제외한 유가할증료, 터미널 혼잡비, 컨테이너 보관료 등 모든 부대운임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 해운부 쿠마르(Susheel Kumar) 장관은 그동안 사전 협의 없이 처리된 불공정한 운임인상

및 부대비용 부과, 정기선사의 서비스에 대해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이후 선사와 대리점들은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인도 정부는 예외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법률은 또한 운송 지연 및 손상에 대해 운송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5만-125만루피(5,570-2만7,850달러)의 과태료나 최고 6개월의 구류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쟁위험 담보 제외지역 철회촉구

해운 및 항만산업 이익확보 위해 보안개선

싱가포르 해사재단은 지난해 6월 로이드 합동 전쟁위험회사가 말라카 해협을 전쟁위험 담보 제외 지역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특별보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카해협 지역은 전세계 해상물동량의 25%, 원유 및 석유물동량의 50%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싱가포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싱가פור는 선박과 항만시설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를 하면서도 자국의 해운 및 항만산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테러 보안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